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 우 양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1년 6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7월 2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어구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 단서 조항 신설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계획(도 정책관)」에 따라 발생빈도가 낮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5조)

다. 조문 및 어구 등 현실화.(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어구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적합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를 “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명칭을 조정함.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으로 조문을 정비함.

제2조제1호 중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4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를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3호”로 조문을 정비함.

제3조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을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으로 조문을 정비함.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 단서 조항 신설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발생빈도가 낮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규정을 정함.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를 제6조로,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16조를 제12조로, 제17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8조를 제14조로 조문을 정비함.

제7조(중전의 제11조), 제8조(중전의 제12조)제2항, 제9조(중전의 제13조), 제11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어구를 현실화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13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문을 정비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6.22.~'21. 6.2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 및 조문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